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23.9.19.)으로 일반 대학의 경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교지기준 면적이 폐지되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교지 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전공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이 유희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교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안 제62조제1항 개정)
- 나. 운영 중인 전공대학 중 동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기준면적을 폐지함(안 [별표3의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 중 동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입학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지기준면적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별표3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 대학 형태의 <u>평생교육시설</u> 은 산 업체(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 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 <u>평생교육시설</u> 및 제 <u>31조제4항에</u> 따른 전공대학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384